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3호 2020. 6. 29. (월)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76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
- 정선군 조례 제2777호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778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7
- 정선군 조례 제2779호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0
- 정선군 조례 제2780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2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조 례

제264회 정선군의회(2020. 06. 12.)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5.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6호

##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균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4.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③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분야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특정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의 비전·목표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실질적 자문을 통해 군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제2조)

-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 자문
  -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제3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 회의 운영 (제7조)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소집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264회 정선군의회(2020. 06. 12.)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6. 2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7호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정선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1. 연구활동기간이 종료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변동된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8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 및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의 작성·변경 승인

3. 연구비의 책정·조정, 사용내역 및 환수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장 및 의원, 사무과장, 전문위원(5급 상당)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2.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이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2. 필요할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연구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그 밖의 필요경비
-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정선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향후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1. 단체명칭 :
- 2. 설립목적 :
- 3.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예정)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 통보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 결과	심사 내용	
	결과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정선군의회 의장 /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별표 기준참고)	물품구입 및 인쇄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임 1. 연구활동 세부내용 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표]

##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	정산내역 기준	비 고
<p>물품구입비 인쇄비 등</p>	<p>○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p>	<p>영수증 첨부</p>
<p>행사비용</p>	<p>○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 (식대 등)</p>	<p>영수증 첨부</p>
<p>비 고</p>	<p>○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p>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 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1조 ~ 제2조)
-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활동범위,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 제11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264회 정선군의회(2020. 06. 12.)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5.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8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정선군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p> <p><u>제2조(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u></p>	<p>정선군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p> <p><u>&lt;삭 제&gt;</u></p>

□ 개정이유

- 가. 2016. 1. 1.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2016. 1. 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나. 2016년 이전 출생아들은 전입 후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불이익 해소 및 정선군 인구늘리기 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세대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삭제

제264회 정선군의회(2020. 06. 12.) 및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5.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9호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오손하는”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후단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하여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2. (생략)
- 3.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5. (생략)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기타 군수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자에 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①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개시 일부터 기산

-----.  
-----  
-----.

- 1. · 2. (현행과 같음)
- 3. 「소방기본법」-----  
-----
- 4. ----- 「소음진동관리법」-----  
-----  
-----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  
-----  
-----  
-----  
-----  
-----  
-----  
-----  
-----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사용개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개시 하는 경우에는 는 사용개시기한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준용) 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준용) -----  
-----  
-----  
대하여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5조(시행규칙) ----- 시행에  
-----  
-----.

개정이유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사용·수익허가 기준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통일된 조례개정으로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용허가 기간을 3년 ⇒ 5년 이내로 변경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기간 조문 일부 정비(제1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조례명 띄어쓰기 등 (제4조, 제9조 ~ 제15조)

제264회 정선군의회(2020. 06. 12.) 및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6.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80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사용검사후” 를 “사용검사 후” 로, “분양주 택단지” 를 “10세대 이상의 분양주택”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승인일로” 를 “사용승인일” 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타 군수” 를 “그 밖의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회(3월, 7월말)” 를 “1~2회”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호” 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호” 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하면” 을 각각 “않으면”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 건축조례」 제3조제1항” 을 “「정선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조제4항” 을 “제5조제1항제4호” 로 한다.

- ① 군수는 매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한

다.

제7조제6항 및 제14조제1항 중 “호 서식” 을 “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u>당해</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해당</u> ----- ----- -----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p>	<p>&lt;삭 제&gt;</p>
<p>제4조(대상단지 등) ① 지원대상은 <u>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 택 단지에</u>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p>	<p>제4조(대상단지 등) ①----- <u>사용검사 후</u> ----- ----- <u>10세대</u> ----- <u>이상의 분양주택</u>----- -----</p>

사용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 <단  
서신설 2009.10.20.>

② (생 략)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지원대  
상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 중 다음 시설물의 유지·보  
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  
는 제비용 등으로 한다. 단,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  
설물에 한한다.

1. ~ 4. (생 략)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

② (생 략)

③ 지원신청은 매년 2회(3월, 7월  
말)에 걸쳐 접수한다. 단, 예산의  
규모에 따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  
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  
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  
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6조(지원금액 등) ① ~ ③ (생  
략)

----- 사용승인일-----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1~2회-----  
----- . 다만-----  
----- .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  
리 지원) ① ----- 「공동주택관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  
조제3호-----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액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p><u>축조례</u>」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p> <p>1.·2. (생략)</p> <p>3. <u>기타</u> 군수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p> <p>④·⑤ (생략)</p> <p>⑥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u>제5조제4항</u>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u>건축 조례</u>」 제3조제1항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제5조제1항제4호</u>----- <u>제12호서식의</u>-----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 ----- ----- <u>제2호서식의</u>----- -----.</p>
--	--

## □ 제안이유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제4조)

- (기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개정)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 매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신청 홍보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식 삭제 (별지 서식7호~서식11호)

- 「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항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